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 1 차 정 보 위 원 회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53호)

2026. 2.

정 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수영 · 박충권 · 조은희 · 이인선 · 김재섭 · 이종욱 · 강선영 ·
안상훈 · 유상범 · 서범수 · 윤영석 · 김기현 의원(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28.
3. 회부연월일 : 2025. 10.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현행법의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업무에 대한 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로 축소되면서 하위 법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이 축소되었음.

그런데 최근 공무원의 공무상 기밀노출과 관련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원조사를 통한 보안업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신원조사는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원조사 대상을 보안업무 축소 이전으로 복원하여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를 줄이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는 대상을 ① 공무원 임용 예정자, ②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③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 ④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하며, 신원조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신원조사) ① 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사를 한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 (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

현행	개정안
	<u>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법률 상 신원조사의 근거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제1항제2호¹⁾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에 신원조사가 포함되고,

신원조사의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및 제37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²⁾와 대통령훈령인 「보안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 6. (생략)

② ~ ④ (생략)

2)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삭제 <2020. 12. 31.>

③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 14., 2020. 12. 31.>

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삭제 <2020. 1. 14.>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삭제 <2020. 12. 31.>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7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신원조사는 국가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조사·수집하는 활동이므로 그 과정에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직임명이나 취업 등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의 자유와도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법률에 신원조사에 대하여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3)의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과거 제20대 국회에서 「신원조사 기본법안」이 강석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는 등 신원조사의 법률 근거 마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온 상황임.⁴⁾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중 하나인 신원조사를 법률에 규정하여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제3조(보안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계 기관(각급 기관과 제33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해당 관리 대상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진다.

1.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2.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
- 3)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4) 한편, 대법원은 “신원조직원무는 구 국가안전기획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담당하던 고유업무의 하나로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보안업무규정 제31조제1항이 모법의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던 바 있음(2000. 12. 8. 선고 98다12041)

다만, 개정안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이 현행 「보안업무규정」상의 신원조사 대상인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공무원 임용 대상자’에 비해 ‘전체 공무원 임용예정자’로 확대되어 신원조사 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개정안과 「보안업무규정」상의 신원조사 대상 >

구 분	「보안업무규정」	개정안
국가정보원장이 실시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	-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	①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함) ②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③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 ④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 임용 예정자 ②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 ③ · ④ (좌 동)

또한, 현재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⁵⁾에 따라 4급 이하의 군인, 군무원, 「방위산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그 밖의 군사보안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방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등의 4급 이하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는 경찰청장이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정보원법」에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권한의 위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국가정보원장의 권한 위탁에 대한 규정을 추가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 5)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영 제3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신원조사를 한다. <개정 2022.11.28>
1. 중앙행정기관등(군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57조제1항 제1호·제2호에서 같다) 임용예정자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경력 상응계급 기준에 따라 3급에 상당하는 계급(군인의 경우에는 중장으로 한다)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행정부시장 및 도·특별자치도의 행정부지사 임용예정자
 3.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
 4. 검사 신규 임용예정자
 5. 국·공립대학교 총장 및 학장 임용예정자
 6. 공무원 임용예정자인 외국인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람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인 사람을 제외한 군인, 군무원, 「방위산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그 밖의 군사보안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0.3.17, 2022.11.28>
-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인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경찰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2.22, 2020.3.17, 2022.11.28>
1. 삭제 <2020.3.17>
 2. 삭제 <2020.3.17>
- ④ 국방부장관 및 경찰청장은 신원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신원조사의 월별통계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28>
- ⑤ 국가정보원장은 국방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위탁받은 신원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의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1.28>
- ⑥ 관계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1.28>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은, 공무원 임용 예정자 중 신원조사 대상
상을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
것은 과거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2020. 12. 15.) 당시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에서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
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한정
함에 따른 것으로, 「보안업무규정」 역시 이에 맞추어 개정(2020. 12.
31.) 개정되었는데,

이는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사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는 취지였던 바 당시 개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신원조사 실시기관인 국가정보원·경찰·군의 조직·인력사정과 국민
기본권 제약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⁶⁾

경찰청은 신원조사 결과가 모든 공무원 임용 대상으로 확대된다면
신원조사 사무를 수탁 수행하는 경찰청의 업무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수반한 조직·인력 확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
견을 제출하였음.⁷⁾

문 의 처
02) 6788-5614

6)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의견(2025. 12.)

7) 경찰청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의견(2025. 12.)